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79
----------	------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 이유

- 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 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반영사항 추가 등 소관부서의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치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1조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허위로	거짓으로
안 제2조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감안	고려
안 제3조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4조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제3조제2항	입회	참관
안 제5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회무	사무
		제4조, 제15조의2제5항	전임자의 잔임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8조, 제9조제6호, 제10조제5호	부의된	회의에 부쳐진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6조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제12조제2호	용이해	쉬워
안 제7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제2호	부의	회의에 부치는
		제34조제3호	구거	도랑
		별표 2	절사한다	버린다
안 제8조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호, 제11조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9조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협의회에 부의하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조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접근성이 용이한	접근성이 높은
안 제11조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안 제12조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장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제2호	허위로	거짓으로
안 제13조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안	고려
안 제14조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	회무	사무
안 제15조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회무	사무
		제7조제1항	부의 안건	안건
안 제16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1호	폐구거	폐도랑
		제47조제1항제1호	감안	고려
		제64조제1항제1호	허위	거짓
안 제17조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12조	허위 변조등의	변조 등의
안 제18조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19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20조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6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17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21조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7조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22조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호	부의한	회의에 부친
안 제23조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7호	허위	거짓
안 제24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안 제25조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제6조제1항	회무	사무
안 제26조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6항	절사하며	버리며
안 제27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제2항	감안	고려
		제12조제2항제1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28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4호, 제34조제3항제3호, 제35조제3호	감안	고려
		제87조제3호	부의한	회의에 부친
		제88조제5항	전임자의 잔임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안 제29조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통할	총괄
		제17조제1항	회무	사무
안 제30조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31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호, 제14조제5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허위로	거짓으로
안 제32조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	용이하도록	확대되도록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제33조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감안	고려
		제7조제2항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34조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35조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9조제4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36조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제3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8조제4항제2호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제9조제1항	회무	사무
안 제37조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6조	허위 또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38조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13조제1항제6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39조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쌍방취하 포함	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감안	고려
안 제40조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통할	총괄
안 제41조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쉽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2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제7조제6호	허위	거짓
안 제43조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6조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12조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44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9조제2호, 제9조제4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허위	거짓
안 제45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호, 제8조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46조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47조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호	부의한	회의에 부친
안 제48조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5호	감안	고려
안 제49조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50조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의회에 부의할	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 제51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절사한	제외하고
안 제52조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5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53조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용이	쉬우며
안 제54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0조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55조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56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감안	고려
안 제57조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허위 또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58조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임자의 잔임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안 제59조	대구광역시 정책토론회청구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7조제1항	통할	총괄
		제7조제1항	회무	사무
안 제60조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개폐	개정·폐지
안 제61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감안	고려
안 제62조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제7조	허위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63조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4항, 제2조의2제3항제4호	감안	고려	
		제2조의2제6항	절사한다	버린다	
안 제64조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쌍방	양쪽	
			일방	한쪽	
안 제65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5조의1제3호	허위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제7조제2항	감안	고려	
안 제66조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허위	거짓	
안 제67조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제13조제1항	통할	총괄	
			별표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
안 제68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제2항 제1호	허위	거짓	
안 제69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	위원회에 부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 제70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부의하는	부치는	
안 제71조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	허위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72조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5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73조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회무를 통할하며	사무를 총괄하며	
안 제74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감안	고려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75조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4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관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
		제5조제1항	회무	사무
		제9조	협의회에 부의할	협의회의 회의 에 부칠
안 제76조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감안	고려
안 제77조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7조제3호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78조	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	제13조의3	제13조의6
		제2조제2항제2호	응급의료정보 센터	응급의료지원 센터
		제3조제4호	위원회에 부의하는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제4조제1항	통할	총괄
		제4조제1항	회무	사무
		제5조제2항	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정책관
		제7조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 제79조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 7조제2항, 제8 조제3항	감안	고려
안 제80조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제4조제3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81조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대구지방 경찰청	대구광역시 경찰청
		제6조제1항	회무를 통할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안 제82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제12조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83조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8호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제4조제1항	통할	총괄
		제6조제1항제1호	협의회에 부의할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 제84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입회	참관
안 제85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제5호	부의하는	부치는
안 제86조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감안	고려
안 제87조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3호	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제10조제5항제8호	부의한	회의에 부치는
안 제88조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호	용이	적합
안 제89조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호, 제10조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90조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91조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안 제92조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보건업무담당 국장	건강증진업무담당 국·실장
		제3조제4항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업무담당 부서장
		제4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5조제1항	회무	사무
		제7조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93조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	제4조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
		제2조제2호	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가목	규칙 제17조제1항제 1호가목
		제2조제4호	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나목	규칙 제17조제1항제 1호나목
		제4조제2항	감안	고려
			제4조	제3조
		제5조제2항	감안	고려
제4조	제3조			
제5조제3항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14조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15조		
안 제94조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제1항	감안	고려
안 제95조	대구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감안	고려
안 제96조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5조제1항	통할	총괄
안 제97조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의2제1항	절사한다	버린다
안 제98조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강사료	강의료
안 제99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	-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추가
안 제100조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	제8조	대구지방 경찰청	대구광역시 경찰청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101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제3호, 제11조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안 제102조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	제2조제1항		
안 제103조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안 제103조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4호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안 제104조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제3호	대구지방경찰청제2부장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안 제105조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	제10조	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안 제106조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제명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제2조	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안 제107조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08조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조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안 제108조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제3장의 제목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제9조의 제목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진흥원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3조	센터	진흥원
		제9조의제6호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삭제
안 제109조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5조제2항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안 제110조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11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관리법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불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8. 29.(7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조 및 제15조의2제5항 전단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각각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8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9조제6호 및 제10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

다.

제6조(「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용이해”를 “쉬워”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4조제3호 중 “구거부지로서”를 “도랑부지로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및 제11조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협의회에 부의하는”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근성이 용이한”을 “접근성이 높은”으로 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15조(「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각각 “사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의 안전의”를 “안전의”로 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의”를 “거짓서류”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공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 변조등의”를 “변조 등의”로 한다.

제18조(「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0조(「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23조(「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24조(「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5조(「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6조(「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를 “1,000원 미만은 버리며”로 한다.

제27조(「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호, 제34조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3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87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88조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29조(「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0조(「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1조(「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32조(「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제33조(「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4조(「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5조(「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6조(「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7조(「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8조(「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9조(「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41조(「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을 “쉽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2조(「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43조(「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45조(「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8조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6조(「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7조(「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48조(「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9조(「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0조(「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회에 부의할”을 “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51조(「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에 대해 지급한다”를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으로 한다.

제52조(「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3조(「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제54조(「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5조(「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6조(「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7조(「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8조(「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9조(「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0조(「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개폐”를 각각 “개정·폐지”로 한다.

제61조(「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3조(「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전단 및 제2조의2제3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조의2제6항 중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한다.

제64조(「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쌍방”을 “양쪽”으로, “일방”을 “한쪽”으로 한다.

제65조(「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제3호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6조(「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67조(「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8조(「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69조(「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0조(「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71조(「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2조(「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3조(「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74조(「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5조(「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관”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76조(「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7조(「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8조(「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6”으로 한다.

제2조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

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9조(「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80조(「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1조(「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82조(「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12조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3조(「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84조(「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85조(「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86조(「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7조(「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8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8조(「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홍보가 용이하다고”를 “홍보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89조(「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0조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0조(「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1조(「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2조(「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업무담당국장”을 “건강증진업무 담당 국·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3조(「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5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를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규칙 제15조”를 각각 “규칙 제1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94조(「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5조(「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6조(「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7조(「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후단 중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한다.

제98조(「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99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00조(「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2조(「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3조(「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한다.

제105조(「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6조(「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조례”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07조(「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8조(「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효문화지원센터”란”을 ““효문화진흥원”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효문화지원센터”를 “효문화진흥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를 “(효문화진흥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문화지원센터”를 “효문화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를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09조(「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110조(「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1조(「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구광역시 조직진단 기관(법인)(제3조제2항 관련)

공 사	공 단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생략) 2. <u>허위로</u>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환수) ----- ----- ----- 1. (현행과 같음) 2. <u>거짓으로</u> ----- -----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①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자 수, 교대인력 등을 <u>감안하여</u>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1. 2.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의 배치기준은 본부장이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u>감안하여</u>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① ----- ----- ----- ----- <u>고려하여</u> ----- ----- 1. 2. (현행과 같음) ③ ----- ----- <u>고려하여</u> ----- -----.

<p>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u>감안하여</u> 본부장이 조정 할 수 있다.</p>	<p>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고려하여</u> ----- ---</p>
<p>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u>감안하여</u> 본부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고려하여</u> ----- -----.</p>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 과 관련하여 시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③ (생략)</p>	<p>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회의에 부</u> <u>치는</u> ----- ---</p> <p>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 ① (생략)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u>일회</u>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u>참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u>회무</u> 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사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제4조(임기)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기타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공사중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공사
7. (생략)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 4. (생략)
5. 제9조제6호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

제8조(비밀유지) -----
----- 회의에
부처진 -----
-----.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

-----.

1. ~ 5. (현행과 같음)
6. -----

----- 회의에 부치
는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
회의에 부치는 -----

<p>6. (생략)</p> <p>제15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u> 한다. ,</p> <p>⑥·⑦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p> <p>⑥·⑦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건설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단일부분의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하자책임</p>	<p>제12조(계약)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구분 및 공정관리가 <u>용이해</u>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 <u>취위</u> ----- -----
---------------------------------------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시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사. 그 밖에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부</u>의하는 사항</p> <p>2. 구·군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사. 그 밖에 법령등에서 심의</p>	<p>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 -----.</p> <p>1.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사. ----- ----- ----- ----- <u>회</u> <u>의에 부치는</u> ----- -----</p> <p>2.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사. -----</p>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p> <p>1. 2. (생략)</p> <p>3.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p> <p>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원의 중지)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거짓이나 그 밖의</u> ----- -----</p> <p>제11조(지원금의 환수) ----- <u>거짓</u> <u>이나 그 밖의</u> ----- ----- ----- -----.</p>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u>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u></p> <p>② ~ ⑥ (생략)</p>	<p>5. ----- -----<u>협회의회의 회의에 부치는</u>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구·군 이외의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구·군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추천해야 한다.</p> <p>가.·나. (생략)</p> <p>다. 기존 시설과 인접하지 않고 <u>접근성이 용이한</u> 곳에 위치한 시설</p> <p>라. (생략)</p>	<p>제5조(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 <u>접근성이 높은</u> ----- -----</p> <p>라.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 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u>위원회</u> <u>에 부의하여야</u>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 보 등) ① ----- ----- ----- <u>위원회</u> <u>의 회의에 부쳐야</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계약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 치·계약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허위로</u>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의2(계약해지 등)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거짓으로</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u>감안하여</u>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 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자율항목) ----- ----- <u>고려하여</u> ----- ----- -----.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략) 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u>회무기록</u>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생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사무기록</u> ----- ----- ----- --. ⑦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①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기타 회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 사무-----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①----- ----- ----- 안건의 ----- ----- 사무----- -----.</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p> <p>1. ----- ----- 폐도랑-----</p>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할 때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11. (생략)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 7. (생략)

②·③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2. ~ 11.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
----- 고려한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

-----.

가. (생략) 나. 그 밖에 <u>허위서류의</u>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생략) ② ~ ④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u>거짓서류</u>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u>허위 변조등의</u>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 ----- -- <u>변조 등의</u> ----- ----- ----- ----- -----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하는</u>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회의에 부치는</u> ----- -----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통할한다</u> . ② ~ ⑤ (생략)	제17조(회의) ①----- ----- <u>총괄한다</u> .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금의 회수)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 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u>거짓이나</u> <u>그 밖의</u> ----- ----- ----- -----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u>부의한</u> 사항	제12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회의에 부친</u> ----- -----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관련법령 및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u>허위보고</u> 를 하였을 때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거짓보고</u> -----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u>으로 임차한 경우</p> <p>5. (생략)</p>	<p>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거짓이나</u> ----- -----</p> <p>5.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회무</u>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u>사무</u>----- -----.</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담금 징수) ① ~ ⑤ (생략)</p>	<p>제3조(부담금 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략)</p> <p>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 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 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u>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증감된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u></p> <p>1.·2. (생 략)</p> <p>⑦ (생 략)</p>	<p>행과 같음)</p> <p>⑥ ----- ----- ----- . --- <u>1,0 00원 미만은 버리며</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용자) ① (생 략)</p> <p>②특별회계 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 전에 용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u>감안하 여</u> 분기별로 용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p> <p>③·④ (생 략)</p>	<p>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용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고려하여</u> ----- ----- .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생략)</p> <p>②특별회계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용자를 받은 경우</p> <p>2. ~ 5.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거짓이나 그 밖의</u>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p>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4. ~ 16. (생략)</p> <p>제87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u>부의한</u> 사항에 대한 자문</p> <p>4. (생략)</p> <p>제88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u> 한다.</p> <p>⑥·⑦ (생략)</p>	<p>----- ----- - 4. ~ 16. (현행과 같음)</p> <p>제87조(기능)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회의에 부친</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88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u> ----.</p> <p>⑥·⑦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u>회무를 통할한다.</u></p>	<p>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u>사무를 총괄한다.</u></p>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통할한다</u> . ② (생략)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 <u>총괄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생략)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u>허위로</u> 보고하였을 때	제14조(사업비의 환수)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거짓이나 그 밖의</u> ----- ----- 4. (현행과 같음) 5. ----- ----- <u>거짓으로</u> ----- --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권장사업) 시장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u>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u>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p> <p>3.·4. (생 략)</p>	<p>제7조(권장사업)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u> ----- --</p> <p>3.·4.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생 략)</p> <p>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비, 생산비, 관리비 등 비용을 <u>감안하여</u>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p>	<p>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고려하여</u> ----- -----</p>

<p>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요금을 면제한다.</p> <p>제7조(재정지원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1. <u>허위 또는 부정</u>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p> <p>2. (생략)</p>	<p>-----.</p> <p>제7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거짓이나 그 밖의</u> ----- -----</p> <p>2.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u>부</u>의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4조(기능) ①-----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회의</u>에 <u>부</u>치는 ----- -----</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p> <p>5. (생략)</p>	<p>제9조(지원의 해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거짓이나 그 밖의</u> ----- -----</p> <p>5.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회의에 부치는</u> ----- -----</p>

<p>② (생략)</p> <p>제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① ~ ③ (생략)</p> <p>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대구지방경찰청</u>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p> <p>3. ~ 5. (생략)</p> <p>⑤·⑥ (생략)</p> <p>제9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u>회무</u>를 총괄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① ----- <u>사무</u>----- -----.</p> <p>②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u>허위</u> 또는 <u>기타</u> 부정한 방법이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p>	<p>제6조(포상금 환수) ----- <u>거짓</u> <u>이나 그 밖의</u> ----- ----- -----</p>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 수하여야 한다.	----- -----
------------------------------	----------------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u>부</u> 의하는 사항 ② (생 략)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회</u> <u>의에 부치는</u> ----- -----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② (생략)</p> <p>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u>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u></p> <p>2. (생략)</p>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기여도 등을 <u>감안하여</u>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 ----- -----. ----- ----- <u>고려하여</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u>통</u> <u>할</u>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생략)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총괄</u> <u>하</u> 며 -----.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생략)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u>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u>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쉽</u> <u>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u>허위 사실을</u>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생략)	제7조(해촉)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거짓 사실</u> ----- 7.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u>부의하는</u>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u> -----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보조	제12조(사업의 집행) ----- ----- ----- ----- 「대구광역시 지방

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보조금 관리 조례」-----.
-------------------	------------------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 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 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2. <u>거짓이나 그 밖의</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 부 또는 <u>허위의</u>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4. ----- ----- ----- <u>거짓</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생 략) 2. <u>허위 또는</u> 익명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3. (생 략)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 ----- ----- --. 1. (현행과 같음) 2. <u>거짓으로 신고하거나</u> ----- ----- 3.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u>허위 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u>거짓이나 그 밖의</u> -- ----- ----- -----.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제8조(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 ① ----- ----- ----- ----- -----

<p>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하는</u> 사항</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회의에 부치는</u> ----- -----</p>
---	--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한</u> 사항</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회의에 부친</u> ----- -----</p>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 (대관허가의 우선순위) 예술기반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4. (생략) 5. 그 밖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공연실적을 <u>감안하여</u>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허가의 우선순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고</u> <u>려하여</u> -----.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u> 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u>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p> <p style="padding-left: 2em;">· ② (생 략)</p> <p>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u>의회</u>에 <u>부의할</u>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p> <p style="padding-left: 2em;">·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의회의 회의에 부칠</u></p> <p>-----.</p>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소집수당 등) ① (생 략)</p> <p>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u>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에 대해</u> 지급한다.</p> <p>③ (생 략)</p>	<p>제19조(소집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분 단위</u></p> <p><u>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u> 지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u>허위 또는</u>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6. (생략)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거짓이나 그 밖의</u> ----- ----- 6.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사업장의 위치는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u>배수가 용이하</u> 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 -----. 1. (현행과 같음) 2. ----- ----- ----- <u>물 빠짐이</u> ----- <u>쉬우며</u> -----

것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시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u>부</u> 의하는 사항	제3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회의에</u> <u>부</u> 치는 -----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한다</u>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u>총괄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u>감안하여</u> 결정한다.	②----- ----- ----- ----- ----- ----- ----- <u>고려하여</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3. (생략) 4. 기타 위원장이 <u>부의하는 사 항</u>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 2.·3. (현행과 같음) 4. ----- <u>회의에 부치는</u> -----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회무를</u> <u>통할한다.</u> ②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u>사무를</u> <u>총괄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u>	<u>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 조례의 제정 또는 <u>개폐</u>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개</u> <u>정·폐지</u>----- ----- -----.</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 조례의 제정 또는 <u>개폐</u>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 ----- ----- <u>개정·폐지</u>----- ----- -----. ----- -----.</p>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 략) ③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u>감안하여</u> 구성할 수 있다. ④ (생 략)</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고려하여</u> -----. ④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포상금 환수) <u>허위 기타</u>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u>거짓이나 그 밖의</u> ----- ----- -----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u>감안하여</u>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장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고려하여</u> ----- ----- -----.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p>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p> <p>1. ~ 3. (생략)</p> <p>4.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u>감안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p> <p>5. ~ 7. (생략)</p> <p>④ 삭제</p> <p>⑤ (생략)</p> <p>⑥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u>절사한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고려하여</u> -----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버린다.</u></p>
--	--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중개보수)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u>쌍방</u>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u>일방</u>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와 같다.</p>	<p>제2조(중개보수) ① ----- ----- ----- <u>양쪽</u> ----- ----- <u>한쪽</u> ----- -----.</p>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1(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생략) 3. <u>허위 또는 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자	제5조의1(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현행과 같음) 3. <u>거짓이나 그 밖의</u> ----- -----
제7조(자금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의 규모 등을 <u>감안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자금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고려하여</u> ----- ----- -----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제17조(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p>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u>허위보고</u>를 하였을 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거짓보고</u>-----</p>
--	--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u>총괄</u>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허위</u>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p>	<p>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거짓</u>-----</p>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u>위원회에 부의하는</u> 사항 ② (생략)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u> ----- -----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활동	제6조(협의회 기능) ----- ----- ----- 1.·2. (현행과 같음) 3. -----

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부치는 ----- -----
----------------------------	-----------------------------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 -----. ②·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부의하는</u>	제2조(기능)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회의에 부</u>

사항	치는 ----- --
----	----------------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u>사무를 총괄하며</u> ----- ----- ----- -----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융자조건) ① (생략)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제10조(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고려하여</u> -----

<p><u>감안하여</u>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수급사정을 <u>감안하여</u> 연중 수시로 용자한다.</p> <p>②·③ (생략)</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금의 관리) ① -----</p> <p>-----</p> <p>---<u>고려하여</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p> <p>1. ~ 4. (생략)</p> <p>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관</u>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p> <p><u>사무</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안건의 회부) <u>협의회에 부</u> <u>의할</u>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p>	<p>제9조(안건의 회부) <u>협회의 회</u> <u>의에 부칠</u> ----- -----. ----- -----.</p>
---	--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구청장·군수가 설치하는 기 반시설에 대하여는 구·군의 재 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 을 <u>감안하여</u>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고려하여</u> --- ----- -----.</p>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p>	<p>제7조(보조금의 반환) ----- ----- ----- -----</p>

<p>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허위 또는 부정</u>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거짓이나 그 밖의</u> ----- -----</p>
--	--

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13조의3</u>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13조의6</u>----- ----- ----- ----- ----- ----- ----- ----- ----- -----.</p>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u>응급의료정보센터</u>를 대표하는 자</p> <p>3. ~ 6.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응급의료지원센터</u>----- --</p> <p>3. ~ 6. (현행과 같음)</p>

③·④ (생략)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5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의료정책관-----

-----.

제7조(수당과 여비) -----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원인조사 시기)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u>감안하여</u>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p> <p>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 지여건을 <u>감안하여</u> 원인조사 기간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원인조사 시기) ① ----- ----- ----- <u>고려하여</u> ----- -----.</p> <p>② ----- --- <u>고려하여</u> ----- ----- -----.</p>
<p>제8조(현지조사) ①·② (생략)</p> <p>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u>감안하여</u> 원인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현지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고려하여</u> --- ----- ----- -.</p>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u>부의하는</u> 사항	3. ----- ----- ---- <u>회의에 부치는</u> ----- -----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u>대구지방경찰청</u>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 ----- -----.</p>
<p>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u>회무를 통할하고</u>,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② (생 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u>사무를 총괄하고</u>----- ----- -----.</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p> <p>1. (생략)</p> <p>2. <u>허위 또는 부정</u>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p> <p>3. (생략)</p>	<p>제11조(지원의 중지)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거짓이나 그 밖의</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u>허위 또는 부정</u>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p>	<p>제12조(지원금의 환수) ----- ----- <u>거짓이나 그 밖의</u> ----- ----- ----- -----.</p>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 ~ 7. (생략)</p> <p>8. <u>대구지방경찰청장</u></p> <p>9. ~ 16. (생략)</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대구광역시경찰청장</u></p> <p>9. ~ 16. (현행과 같음)</p>
<p>제4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u>통할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 ----- <u>총괄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협의회에 부의할</u> 안건의 사전심의</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실무위원회) ①----- ----- ----- ----- ----- -----.</p> <p>1. <u>협의회의 회의에 부칠</u>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u>입회하에</u>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 ----- ----- -- <u>참관하에</u> -----.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u>부의</u> 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부치</u> <u>는</u> -----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제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제

<p>한 등) ①·② (생략)</p> <p>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사용기한·운영의 효율성 등을 <u>감안하여</u>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고려하여</u> ----- ----- -----.</p>
---	--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2. (생략)</p> <p>3. <u>지방경찰청</u> 소속 경찰공무원</p> <p>4. ~ 9. (생략)</p> <p>④·⑤ (생략)</p> <p>제10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생략)</p> <p>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광역시경찰청</u> -----</p> <p>4. ~ 9.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같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과 관련되어 위원회가 <u>부</u>의 <u>한</u> 사항</p> <p>⑥ ~ ⑨ (생략)</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회의</u> ----- <u>에 부치는</u> -----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헌혈장려사업의 홍보)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헌혈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헌혈 <u>홍보</u>가 <u>용이하다</u>고 판단되는 매체</p>	<p>제12조(헌혈장려사업의 홍보)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홍보</u>에 <u>적합하다</u>고 -----</p>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p>	<p>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 -----</p>

<p>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u>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u></p> <p>3. 4. (생략)</p> <p>제10조(환수) <u>허위 기타 부정</u>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u>거짓으로 신고하거나</u>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환수) <u>거짓이나 그 밖의</u> ----- ----- -----.</p>
--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u>통할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u>총괄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임기) ① (생략)</p> <p>② 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u></p>	<p>제3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임위원 임기의</u></p>

<p><u>잔임기간으로</u> 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u>남은 기간으로</u> --.</p> <p>제4조(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회의에 부치는</u> -----</p>
--	--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협의회 위원은 <u>보건업무담당 국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생략)</p> <p>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보건위생과장이</u> 된다.</p> <p>제4조(임기) ① (생략)</p> <p>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u>전</u></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건강증진업무 담당 국·실장</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u>-----.</p> <p>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전임</u></p>

<p><u>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u> 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u>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u> 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u>대구광역시장</u> <u>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p>	<p><u>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u> --- -----.</p>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u>사무</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당과 여비) ----- ----- 「<u>대구광역시 각</u> <u>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 ----- -----.</p>
---	---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 다) <u>제5조</u>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 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방법 및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p>	<p>제1조(목적) ----- ----- --- <u>제4조</u> ----- ----- ----- ----- ----- ----- -----</p>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조 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생략)
4.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주변 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칙 제15조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관

-----.

제2조(정의) -----

---.

1. ----- 법 제4조 제3항 및 규칙 제17조-----

-----.
2. -----

----- 규칙 제17조-----

-----.
3. (현행과 같음)
4. -----

----- 규칙 제17조-----

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6. (생략)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 (생략)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지역교통여건·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5조(시내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 (생략)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 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5.·6. (현행과 같음)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 고려
하여 -----
-----.

제5조(시내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 고려하여

-----.

<p>록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개 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u>감안하 여</u> 건설한 사업자의 신청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1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시장은 기존노선을 운행중 인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 <u>고려하여</u>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 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 선순위를 정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하는</u> 사항</p>	<p>제4조(기능)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회의에 부치는</u> ----- -----</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p>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u>강사료</u>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강의료</u> -----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여성교육국장, 복지국장, <u>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u> 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u> ----- -----. ③ ~ ⑧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u>대구지방경찰청</u> ,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u>대구지방경찰청</u> 등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2. (생략)</p> <p>3. <u>대구지방경찰청</u> 또는 시 관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p> <p>⑤·⑥ (생략)</p> <p>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u>대구광역시교육청</u>, <u>대구지방검찰청</u>, <u>대구지방경찰청</u>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④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 -----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 -----.</p>
---	--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u>대구지방경찰청</u> ,	제2조(정의) ①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p>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p> <p>② (생략)</p>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대구지방경찰청장</u></p> <p>④ (생략)</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구광역시경찰청장</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대구지방경찰청</u>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간사) ① ----- ----- ----- <u>대구광역시경찰청</u> ----- -----.</p> <p>②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2. (생략)</p> <p>3. <u>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u></p> <p>4. ~ 7.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 부장</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u>지방경찰청</u>,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 ----- ----- ----- <u>대구광역시</u> <u>경찰청</u>-----</p>

구축하여야 한다.	-----.
-----------	--------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u>	<u>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 조례</u>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 금(所屬歲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u>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u>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 ----- ----- ----- ----- --- <u>상수도사업특별회계</u> ----- -----.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u>보조금관리조례</u> 」와 「대구광	제3조(정의) ----- -----. 1. ----- 「지방자치단 <u>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u>

<p>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3. (생략)</p>	<p>를」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p> <p>2. 3.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p> <p>1. ~ 5. (생략)</p> <p>6. “<u>효문화지원센터</u>”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효문화진흥원</u>”이란 ----- ----- ----- ----- -----.</p>
<p>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p>	<p>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p>

<p>한다.</p> <p>1. ~ 5. (생략)</p> <p>6. <u>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u></p> <p>7. (생략)</p> <p>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u>센터</u>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7. (현행과 같음)</p> <p>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p> <p>-----</p> <p><u>진흥원</u> -----</p> <p>-----</p> <p>-----</p> <p>-----.</p>
---	--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u>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u>」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u>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u>」-----</p> <p>-----</p> <p>-----</p> <p>-----.</p>

<p>가 있는 것을 말한다.</p> <p>제5조(설치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u>전력기술 관리법</u>」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p>	<p>-----.</p> <p>제5조(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방지시설은 「<u>산업기술혁신 촉진법</u>」 제15조의2 -----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p>
--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u>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8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 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대기환경보전법」, 「<u>소음진동규제법</u>」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p> <p>5. (생략)</p>	<p>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음·진동관리법</u>」----- ----- -----</p> <p>5.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 차